

HD-RM-001

리스크 관리규정

Ver1.1

제. 개 정 이 력

[illegible]

Risk Management Policy Declaration

동아쏘시오홀딩스 리스크 관리 선언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예방적 관리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모든 영역에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2. 전사적 접근

리스크 관리는 특정 부서나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활동으로 간주하며,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

3.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

모든 리스크 관리 활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며,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 방침을 통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대표이사: 김민영 *My/min*

발효일: 2025년 04월 01일



DONG-A SOCIO HOLDINGS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장래에 부담하게 될 손실 또는 경영상 불이익의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감소 또는 해소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스크"란 동아쏘시오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이 자기자본, 수익, 사업 추진과 조직운영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말한다.
2. "전략리스크"란 홀딩스의 전략적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홀딩스가 채택한 비즈니스 모델, 시장 진입 전략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3. "평판리스크"란 회사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홀딩스의 이미지, 명성, 신뢰도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4. "투자사업리스크"란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소로 인해 투자자 또는 홀딩스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5. "경영진리스크"란 홀딩스의 경영진이나 리더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의미하며,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부적절한 전략 수립, 조직 내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조직의 성과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6. "운영리스크"란 홀딩스의 내부 프로세스, 시스템, 인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의미하며, 홀딩스 내부의 작업과정, 인력의 역량, 시스템의 신뢰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7. "자원리스크"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의미하며, 자금, 노동력, 시간, 재료 등과 관련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거나 활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8. "기술리스크"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의미하고, 기술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말한다.

9. "비즈니스파트너리스크"란 외부조직과의 협력이나 제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이로 인해 조직의 성과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며, 회사가 파트너사, 공급업체, 협력사 등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말한다.
10. "컴플라이언스리스크"란 홀딩스에 적용되는 기존의 법규, 규제, 규칙, 표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11. "규제리스크"란 홀딩스가 국가의 법규, 규제, 정부 정책 등이 변경되어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현재의 홀딩스 활동이 불법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12. "윤리리스크"란 홀딩스가 운영, 업무 처리 혹은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있어서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13. "팬데믹리스크"란 감염성 질병이나 보건 위기가 홀딩스의 운영, 연속성, 재무적 안정성과 전반적인 목표 달성에 잠재적 위협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14. "부패리스크"란 홀딩스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뇌물, 향응, 금품 제공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의사결정 및 운영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15. "자연재해리스크"란 지구의 자연스러운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예를들면, 지진, 태풍, 홍수, 화재, 가뭄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발생되며, 홀딩스 개개인 구성원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프라, 업장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16. "대내외 환경리스크"란 홀딩스를 둘러싼 환경의 전반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내부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로는 조직 문화, 거버넌스, 리더십 및 구조 등 내부 분위기나 조직적 특성이 예상치 못하게 변하여 홀딩스의 장기적 방향성과 의사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제 동향, 정치적 불안정,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혁신, 산업 트렌드 등 홀딩스가 활동하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사업 환경 및 중장기 전략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17. "재무리스크"란 홀딩스의 재무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무 요인과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역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시장 변동성, 신용 불이행, 유동성 제약, 운영 실패, 규제 준수 이슈 그리고 홀딩스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재정적인 변수들이 리스크에 해당이 된다.
18. "자금조달리스크"란 홀딩스가 조직 운영, 투자 혹은 성장 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처로부터 자본이나 자금 유치를 위한 노력과 연관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19. "리스크 관리"란 리스크의 식별, 분석 및 대응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 리스크 관리 단계를 말한다.

20. "리스크 식별"이란 리스크의 근원을 인식하고, 리스크 인자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리스크의 실체, 소재 및 성격을 적시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 "리스크 평가"란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 파악된 리스크 인자의 결과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피해영향도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2. "리스크 대응"이란 식별·평가된 리스크 인자의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으로 리스크의 이전, 회피, 감소 또는 수용 등의 대응 전략을 말한다.

23. "리스크 이전"이란 리스크의 잠재적 결과를 다른 기관에 부담시키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24. "리스크 회피"란 리스크에 관한 노출 자체를 회피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면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25. "리스크 감소"란 리스크가 발생한 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사전에 리스크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낮추어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 정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말한다.

26. "리스크 수용"이란 리스크를 이전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감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주관부서] 1.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리스크 관리의 전략 및 절차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2.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리스크 관리의 기본 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 ② 연 1회 이상 종합 리스크 현황 대표이사 보고
- ③ 홀딩스의 리스크 관리 추진 상황 점검 및 ESG위원회 보고
- ④ 그 밖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3.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 외에 모든 부서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장 리스크 관리의 정책

제4조 [리스크 관리의 목표] 홀딩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리스크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보함을 목표로 한다.

1. 홀딩스의 가치 창출과 자산 보호
2. 적절한 자기자본의 관리 및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 지표 관리
3. 리스크 관리의 최적화
4. 리스크 사전 예방을 통한 적절한 신용등급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

제5조 [리스크 관리의 원칙] 홀딩스는 리스크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리스크 관리는 홀딩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의 관리를 위한 정책과 조직, 절차 및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리스크는 유형별로 관리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유형별 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특정한 부분에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
4. 리스크의 과도한 통제로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수준으로 설정 · 관리하여야 한다.
5. 리스크 관리와 보고 체계는 각 부서로부터 독립성 및 견제와 균형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리스크 측정 및 보고 시 지표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 3장 리스크 관리의 절차 및 방법

제6조 [리스크 관리의 계획 수립]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홀딩스의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연간 리스크 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보고하여야 하고, 리스크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의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분석]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와 해당 부서는 SWOT 분석을 통해 각 부서별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내외부 이슈 사항을 파악하여 홀딩스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리스크의 식별]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와 해당 부서는 홀딩스의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서 정한 리스크카테고리로 식별한다.

제9조 [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 리스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측정 · 평가한다.

1. 리스크 유형별로 관리대상 사업 및 자산 등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그 특성에 적합하도록 측정 방법 및 측정 지표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리스크의 적정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정 방법의 부재로 인하여 리스크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평가 또는 경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은 문서화한다.

2.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발생가능성 = (발생빈도 + 통제수준) ÷ 2

영향도 = (영향범위 + 심각수준) ÷ 2

모든 각 점수는 1~5점 중 선택하며,

발생가능성 + 영향도 = 위험도 로 산출한다.

위 점수를 기반으로 **Low, Medium, High, Strictly managed** 4가지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며,

L은 4점 이하, **M**은 7점 이하, **H**는 10점 이하로 설정한다.

S는 영향범위, 심각수준이 4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제10조 [리스크의 평가 및 대응]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보고된 리스크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한 후 리스크의 이전 · 회피 · 수용 · 감소 4가지 처리 방안으로 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그에 필요한 조치 및 대응 방안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리스크의 모니터링 및 통제] 1.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리스크 규모의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2.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리스크 별 담당 부서에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리스크 별 담당 부서에 해당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리스크 관리의 보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리스크 관리 현황을 대표이사 및 ESG위원회에 보고한다.

1. 리스크는 계량화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리스크는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한다.

3. 리스크는 일관성 있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2025년 04월 01일 부로 적용된다.